

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일반공급(가점제)

***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에 의거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.**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서류제출기간	2022.01.13.(목) ~ 2022.01.20.(목) 8일간 ※ 필히 방문예약을 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 (미예약시 입장 불가)
제출 장소	'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' 견본주택 (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65번지) ※ 예약자 1인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

■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(보관기간 :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,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※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) ※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(본인 발급 기준 참조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 ·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 및 세대원 전원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일반공급 가점제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이상 장기복무공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비속	•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부적격 소명자료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•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(※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)
	○		무주택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물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사가격증명원(개발주택가격 확인서,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포함)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) 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,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기타	-	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	

당첨자 서류제출 안내문 일반공급(추첨제)

***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에 의거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은 의무사항입니다.**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.
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서류제출기간	2022.01.13.(목) ~ 2022.01.20.(목) 8일간 ※ 필히 방문예약을 하셔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 (미예약시 입장 불가)
제출 장소	'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' 견본주택 (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65번지) ※ 예약자 1인 외 동반 1인까지만 입장 가능

■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(보관기간 :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,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통 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※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) ※ '본인서명사실확인서' 제출 시 대리계약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(본인 발급 기준 참조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 및 세대원 전원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부적격 소명자료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	○		기타	-	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